



선	기관의 장
람	

제1448호

2026년 9월 28일(월)

- 차례 -

입법예고

제2026-35호

강화군 사회연대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

고시

제2026-203호

도시계획시설(공원_어린이공원) 실시계획 인가 변경고시

- 8

제2026-204호

2025회계연도 강화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사항 고시

- 10

입 법 예 고

강화군의회 공고 제 2026 - 35호

강화군 사회연대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강화군 사회연대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의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강 화 군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 등(안 제3조 ~ 제6조)
- 사회연대경제계획 수립(안 제7조)
- 우선구매, 교육·훈련, 재정지원 등(안 제8조 ~ 제12조)

- 협력과 연대 촉진, 중간지원조직(안 제13조 ~ 제14조)
- 홍보 및 포상(안 제15조 ~ 제16조)

3. 제정 조례안: 별도 첨부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강화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032-930-3757, 팩스 032-930-3509,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서식

강화군 사회연대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자	해당 조항	의견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도 사용 가능합니다.

5.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강화군 조례 제 호

강화군 사회연대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연대경제”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연대경제조직”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3. “사회연대경제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직과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선정된 예비마을기업을 말한다.
4.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6.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란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
2.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3. 사회연대경제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4.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육성·지원

5.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연대경제 및 복지 업무 관련 담당 과장

2. 학계 등 사회연대경제 관련 전문가

3.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현장 활동가

4.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연대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연대경제 업무 담당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연대경제계획) ① 군수는 사회연대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강화군 사회연대경제계획(이하 “경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연대경제의 현황 및 여건, 전망
2.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
3.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5. 사회연대경제 조직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6. 사회연대경제의 발전을 위한 재정, 교육, 홍보
7.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경제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군수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용역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연대경제기업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서비스 위탁시 우선고려) 군수는 공공서비스 제공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비 등 지원) 군수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 지원) 군수는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연대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실적 보고,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연대경제조직 등을 지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와 지도 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협력과 연대 촉진) 군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2.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공동연구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3. 사회연대경제 클러스터 조성 및 판로 구축

제14조(중간지원조직) 군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효과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15조(홍보)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 군수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기여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 3. 16.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화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고 시

강화군고시 제2026 - 203호

도시계획시설(공원_어린이공원) 실시계획 인가 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_길상어린이공원)사업 실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 9. 28.

강 화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82-9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어린이공원)
 - 명칭 : 길상어린이공원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적 : 14,352㎡→14,417.8㎡(증65.8㎡) 【강화군고시 제2026-130호】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강화군수
 -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7. 06. 31.(당초: 2026.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별 첨】

○ 편입토지 현황

위치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구분	
					14,352	14,417.8	14,352	14,417.8			
길상면 온수리	53-10	772	답	답	619.0	623.4	619.0	623.4	강화군	공유지	
	82-9	770	답	답	2,292.0	3,140.4	2,292.0	3,140.4	강화군	공유지	
	82-11		답		830.0		830.0		강화군	공유지	
	469-2	768	답	답	1,573.0	4,445.5	1,573.0	4,445.5	강화군	공유지	
	469-3		답		2,566.0		2,566.0		강화군	공유지	
	470-3		전		298.0		298.0		강화군	공유지	
	480-1	776	전	답	107.0	5,177.4	107.0	5,177.4	강화군	공유지	
	481-1		답		956.0		956.0		강화군	공유지	
	481-2		답		2,681.0		2,681.0		강화군	공유지	
	481-3		답		851.0		851.0		강화군	공유지	
	481-4		답		530.0		530.0		강화군	공유지	
	481-30		답		21.0		21.0		강화군	공유지	
	688	769	구	구	781.0	16.2	781.0	16.2	농림축산 식품부	국유지	
		773		구					농림축산 식품부	국유지	
		774		구					강화군	공유지	
		775		구					농림축산 식품부	국유지	
	695	777	도	도	212.0	211.3	212.0	211.3	국토 해양부	국유지	
	741	771	도	도	35.0	37.8	35.0	37.8	국토 해양부	국유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6-204호

2025회계연도 강화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사항 고시

제31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2026. 9. 23.)에서 의결, 확정된 2025회계연도 강화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기금결산 포함)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6. 9. 28.

강 화 군 수

○ 2025회계연도 강화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사항

(단위 : 원)

구 분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예 산 현 액		861,431,889,226	860,150,020,226	1,281,869,000
결산액	세 입	857,596,771,010	856,347,045,302	1,249,725,708
	세 출	726,022,260,849	725,017,246,689	1,005,014,160
	결산상 잉여금	131,574,510,161	131,329,798,613	244,711,548
결산상 잉여금	다음연도	계	96,092,706,651	—
	이월액	명시이월	19,175,611,190	—
		사고이월	6,869,177,840	—
		계속비이월	70,047,917,621	—
세부내역	보조금 반납금	13,034,729,130	13,000,323,100	34,406,030
	지정재원잉여금	1,123,000,000	1,123,000,000	—
	순세계 잉여금	21,324,074,380	21,113,768,862	210,305,518

※ 특별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 2025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는 강화군청 세무회계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